#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51

발의연월일: 2024. 7. 25.

발 의 자:임미애·임오경·김 윤

염태영 · 오세희 · 윤종오

박희승 · 김정호 · 이연희

이광희 • 전진숙 • 복기왕

김문수 · 윤후덕 · 김용민

의원(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인정되는 정당의 지역조직으로 시·도당과 기초단위 조직으로 당원협의회가 규정되어 있는데, 당원협의회는 정당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상설사무소 설치가 금지되며 유급사무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음. 이에 따라 당원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상시적인 교육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구당 제도를 재도입하는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음.

과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했으나 뚜렷한 정치개혁의 실익도 크지 않고 오히려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더 크 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소멸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부 상하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도당을 비롯한 정당 지역조직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정당 조직에 현행 중앙당과 시·도당에 더해 국회의원지역선 거구에 지구당을 구성하도록 하는 대신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도록 함 으로써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전국 17개 시·도당의 유급사무원을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여 정당의 지역 정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안 제3조).
- 나.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며, 법 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함(안 제6조 및 제18조).
- 다.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150인 이내로 하고, 지구당의 유급 사무직원은 2인 이내로 함(안 제30조).
- 라. 지구당의 대표자는 소속 당원의 총회 또는 대의기관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함(안 제30조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250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을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이하 "지구당"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중 "100명 이상의"를 "100명 이상의, 지구당의 경우에는 50명이상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및 지구당"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및 지구 당"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및 지구당"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구당"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구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다"를 "하고, 지구당은 1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및 지구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구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를 "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도당"을 각각 "지구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도당"을 각각 "지구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당원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당에도 소속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당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절차 및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당"은 "시·도당"으로 본다. 제24조제1항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구당"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및 지구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또는 지구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당"을 "시·도당, 지구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 시·도당"을 "해당 시·도당 또는 지구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구당"으로 한다.

이 경우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한 시·도당 또는 지구당은 해당 탈당원이 속하였던 지구당 또는 시·도당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한다.

제26조 전단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구당"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구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100인"을 "150인"으로, "정한다"를 "정하고, 지구당에는 2명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지구당의 대표자 선임) 지구당의 대표자는 소속 당원의 총 회 또는 대의기관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제30조의3(지구당의 읍·면·동별 사무소 설치 제한) 누구든지 지구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별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및 지구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및 지구당"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시·도당의"를 "시·도당 및 지구당의"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및 지구 당"으로 한다.

제47조 중 "시·도당"을 "시·도당 또는 지구당"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구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0조의3(지구당의 읍·면·동별 사무소 설치 제한)를 위반하여 지구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별 사무소를 둔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당의 당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당한 당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당이 창당된 경우 그 당원은 해당 지구당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	제3조(구성)
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	
·도에 각각 소재하는 <u>시·도</u>	<u>시·도당(이</u>
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	<u>하 "시·도당"이라 한다) 및 국</u>
으로 구성한다.	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
	는 지구당(이하 "지구당"이라
	<u>한다)</u>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6조(발기인)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	
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u>100명</u>	<u>100</u> 명
<u>이상의</u>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이상의, 지구당의 경우에는 50
	명 이상의
	<b></b>
제9조( <u>시·도당</u> 의 창당승인) <u>시·</u>	제9조( <u>시·도당 및 지구당</u> 의 창
<u>도당</u> 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당승인) <u>시·도당 및 지구당</u>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b>.</b>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①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시·도당</u> 의 소재지와 명칭	7. <u>시·도당 및 지구당</u>

- 8. <u>시·도당</u>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 ② ③ (생 략)
- 제13조(<u>시·도당</u>의 등록신청사항) ① <u>시·도당</u>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5. (생략)
  - ② ③ (생 략)
-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 ·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한다.
  - 1. ~ 5. (생략)
- 제18조(<u>시·도당</u>의 법정당원수) ①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u>한다</u>.
- ② (생 략) 제19조(합당) ①·② (생 략)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3)

8. <u>시·도당 및 지구당</u>
정당원수) ① <u>하고,</u> 지구당은 100명 이상의 당원을 <u>가져야 한다</u>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합당) ①·② (현행과 같음)
$\Box$ $\prime$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 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u>시·도당</u>은 소 멸된 것으로 본다.

### ⑤ (생략)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u>시</u>·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 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② <u>시·도당</u> 또는 그 창당준비

<u>시·도당 및</u>
지구당
<u>시·도당 및 지구당</u>
4
<u>시·도당 및 지구</u>
<u>당</u>
⑤ (현행과 같음)
세23조(입당) ①
<u>지구</u>
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
1. ~ 3. (현행과 같음)
② <u>지구당</u>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 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 처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 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 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③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 입당원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 인당하다고 역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단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지구당</u>
③ <u>지구당</u>
<u>지구당</u>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 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 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제24조(당원명부) ① <u>시·도당</u>에 제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당원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시・도당에도 소속된 것
<u>으로 본다.</u>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주소
지를 관할하는 지구당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당 또는 그 창
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
여야 하며, 그 절차 및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당"은
"시·도당"으로 본다.
<u>⑥</u> (현행 제4항과 같음)
베24조(당원명부) ① <u>시·도당 및</u>
<u>지구당</u>
·.
② <u>시·도당 및 지구</u>
<u>당</u>
<u>১</u> ]

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 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 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u>시·도</u> 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 ③ • ④ (생 략)

제25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 기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 ③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u>당해</u>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 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 야 한다. <후단 신설>

<u>시·도당 및 지구당</u>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탈당) ①
시·도당 또는 지구당
시·도당 또는 지구당
1. ~ 3. (현행과 같음)
(2)
<b></b>
)
<u>시·도당, 지구당</u>
,
③ <u>해당</u>
<u>시·도당 또는 지구당</u>
<u>이 경우</u>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한 시ㆍ
도당 또는 지구당은 해당 탈당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 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 부하고, 해당 <u>시·도당</u>에 통보 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 하게 하여야 한다.
- 제26조(탈당원명부) <u>시·도당</u>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 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 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도당으로 및 폐기) ① 시·도당으로 당원명부·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할수있다.

② (생 략)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원이 속하였던 지구당 또는 시
•도당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u>야 한다.</u>
<b>4</b>
<u>시·도당 및 지구당</u> -
제26조(탈당원명부) <u>시·도당 및</u>
지구당
<u>.</u>
제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
의 보관 및 폐기) ① <u>시·도당</u>
및 지구당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②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제35조(정기보고) ① 중앙당과 시 •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 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 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

/ 기반 <i>)</i> ①
<u>150인</u>
<u>정하고,</u>
지구당에는 2명을 초과할 수 없
<u>다</u>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지구당의 대표자 선임)
지구당의 대표자는 소속 당원
의 총회 또는 대의기관에서 무
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제30조의3(지구당의 읍・면・동
별 사무소 설치 제한) 누구든
지 지구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별 사무소를
<u>둘 수 없다.</u>
제35조(정기보고) ① <u>시</u>
•도당 및 지구당
시·도당 및 지구당

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과 시·도당은 제17 ② ----시·도당 및 지구 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 (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 -----시·도당 및 지구당--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 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활동의 자유) ①・② (생 제37조(활동의 자유)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삭 제> 자치구・시・군, 읍・면・동별 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 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 다.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 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그 취소를 유예한다.

2. • 3. (생략)

② (생략)

제46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 위원회는 시·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현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한다.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 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 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 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 의 <u>시·도당</u> 창당승인의 취소

<u>시·노낭 및 지구낭의</u> -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 <u>시·도당 및 지구당</u> 창당
승인의 취소)
<u>시·도당 및</u>
지구당
제47조(해산공고 등)
- <u>시·도당 또는 지구당</u>

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 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 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 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다 저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 ·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 2. (생 략)
  -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
    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② (생략)

∥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1
\] •
 도당 및 지구당
2. (현행과 같음)
3. 제30조의3(지구당의 읍·면
·동별 사무소 설치 제한)를
위반하여 지구당 하부조직의
<u> </u>

운영을 위하여 읍 • 면 • 동별

사무소를 둔 자

② (현행과 같음)